

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7호
- 나. 발의자 : 성백진 의원
- 다. 발의일자 : 2014년 11월 20일
- 라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5일

2. 제안이유

-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“부의”를 “회의에 부치다”로 하고 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 “잔임기간”을 “임기가 남은 기간”으로 하고 “년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하고 “소집하고자 하는”을 “소집 하려는”으로 하며 “비치”를 “보관”으로 함 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기타 :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,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.

〈조항별 신·구 대비표〉

조항 구분	현행	개정안
제2조 제9호 중	부 의 하는	회의에 부치는
제4조 제3항 중	해 축 할	위 축해 제 할
	잔 임 기간으로	임기가 남은 기간으로
제6조 제1항 중	년2회	연 2회
제6조 제2항 중	소 집 하고자 하는	소 집 하려는
	부 의 사 항을	회의에 부치는 사항을
제10조 중	년2회	연 2회
제11조 중	비 치 하 여 야	보 관 하 여 야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, 이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